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5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67.0%,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는 등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다.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 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의2 신설).
- 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삭제하고"를 "차단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문자, 음성, 화상 등 수단을 불문하고 이용자 간의 의사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강요하는 정보(이하 "성매매 알선 등 정보"라 한다)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성매매 알선 등 정보를 발견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성매매 알선 등 정보를 즉시 차단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대화서 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성매매알선 등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 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성매매알선 등 정보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성매매알선 등 정보를 발견한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을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3항·제4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② (생 략)	행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u>1까지 가중한다.</u>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		
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	무) ①		
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u>삭제하</u>			
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	i		
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			
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			
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 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 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을 발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재17조의2(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
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
서비스(문자, 음성, 화상 등 수
단을 불문하고 이용자 간의 의
사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온
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이하 "온
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라 한
다)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강요하는 정보(이하 "성매매 알선 등
정보"라 한다)가 유통되지 아

②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

망에서 성매매 알선 등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거나 발견된 성매매 알선 등 정보를 즉시 차단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 대화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대 화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에서 성매매알선 등 정보를 발 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 된 성매매알선 등 정보의 전송 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 망에서 성매매알선 등 정보를 발견한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 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 ④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신 설>

제67조(과태료) ① <u>제17조제2항을</u>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생 략)

라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 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8조의2(상습범) 상습적으로 제 2조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 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제67조(과태료) ① <u>제17조제2항·</u> 제3항, 제17조의2제3항·제4항을

-----.

② ~ ⑤ (현행과 같음)